

#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

- 일시 : 2014. 7. 8. (화) 15:00~17:00
- 장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홍 범 교 · 이 상 업

## 개 요

- 주제 :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 일시 : 2014년 7월 8일(화) 15:00~17:00
- 장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 ▶ 개회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5:10~16:5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 사회자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 ▶ 토론자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민성기 은행연합회 상무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가나다 순)

16:5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 목 차

## 제 I 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I. 서 론 .....	1
II.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제도 현황 .....	2
III.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 실태 분석 .....	6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이용 현황 .....	6
가. 세금우대종합저축 .....	6
나. 생계형저축 .....	7
다.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 .....	7
2. 설문조사를 통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제도의 평가 .....	9
가. 설문설계 및 표본선정 .....	9
나. 표본의 분포 .....	10
다. 시사점 .....	11
IV.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제도 개선방안 .....	18
1.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 .....	18
가.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 .....	18
나. 생계형 저축 .....	19
다. 세금우대종합저축 .....	19
2. 제도 개선 방안 .....	21
가. 중장기적 방향 .....	21
나. 일몰도래상품에 대한 대응방안 .....	22

## 제Ⅱ부: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정비 방안

I. 서론 .....	31
II. 파생금융상품 소득세 과세 .....	32
1. 소득세 과세 방안 .....	32
2. 소득세 부과시 경제적 효과 .....	32
가. 세수효과 .....	32
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34
다. 양도소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34
III.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과세 .....	36
1. 거래세 과세 방안 .....	36
2. 거래세 부과시 경제적 효과 .....	36
가. 세수효과 .....	36
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37
IV. 정책 시사점 .....	40
참고문헌 .....	42

# 제1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 I. 서론

- 최근 정부는 복지재정지출 증대에 따라 세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노령화 사회의 도래 등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복지 수준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렇지 않다면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됨
  
-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거에 저축 증대, 금융업종에 대한 지원과 업종 간 형평성,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음
  -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세제지원이 도입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변화하는 경제 환경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이들 제도의 정책목표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
  
- 조세지원제도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제도의 개선도 현재의 수혜 계층은 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 금융업종에 따라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 본고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세계 전반에 걸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바, 금융상품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II.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제도 현황

- 2014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15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항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1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음
  - <표 II-1>은 각종 비과세·금융상품별 특례요건을 보여줌
    - 대부분의 저축이 가입조건과 한도가 있으나, 장기저축성보험, 부동산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가입조건이나 한도가 없음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4년 저축지원 관련 국세감면 규모는 1.8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국세감면액 33조 1,694억원의 5.3% 수준(<표 II-2> 참조)
  - 금융소득 관련 조세지출 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 5) 및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조특법 제89의 3)의 조세지출 규모가 8,426억원으로 가장 큼
  - 두 번째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4,184억원 수준
  - 그다음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로 1,925억원,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897억원 순

<표 II-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특례요건

구분	상 품	가입자격	기간	저축한도	비고	기한	기타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만20세 이상	10년 이상	월 100만원 한도	중도해지 및 불입기간 만료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과	2000년말	적용기한 종료 <sup>1)</sup>
	장기주택마련저축	만18세 이상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특정 규모 이하의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	7년이상	분기별 300만원		2012년말	적용기한 종료
	장기회사채형저축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거래 주식 투자	3년이상	거치식 저축 1인 5,000만원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소득부터는 혜택종료	2009년말	적용기한 종료
	장기주식형저축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거래 주식 투자	3년이상	적립식저축 연1,200만원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소득부터는 혜택종료	2009년말	적용기한 종료
	생계형저축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등		3,000만원		2014년말	적용기한 종료
	조합 등 예탁금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3,000만원	2016년 5%, 2017년부터 9% 세율 적용	2015년말	혜택종료 <sup>2)</sup>
	조합 등 출자금	조합원, 회원 등		1,000만원		2015년말	혜택종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기준이하 농지 및 선박소유요 농어민 (일반: 10ha이하 임업인, 2ha이하 임차농, 20t이하 어업인, 저소득: 5ha이하 임업인, 1ha이하 임차농, 5t이하 어업인)	5년만기 저축 3년이상	연 144만원 (저소득층 연 120만원)	기금에서 저축장려 추가금리 제공 (일반 농어민 3년 연 1.5%, 5년 연 2.5%의 장려금리, 저소득 농어민 3년 연 6%, 5년 연 9%의 장려금리를 적용)	2014년말	적용기한 종료
	재형저축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	7년	분기 300만원		2015년말	적용기한 종료
	장기저축성보험	개인	10년이상	한도 없음	5년 이상 적립, 10년 이상 유지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조합원	1년이상	1,800만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비과세			

구분	상 품	가입자격	기간	저축한도	비고	기한	기타
저울분리	세금우대종합저축	만20세 이상, 생계형저축 적격자	1년 이상	1,000만원 (만20세이상), 3,000만원(생계형저축 적격자)	9% 분리과세	2014년말	적용기한 종료
	해외자원개발회사	개인		한도 없음	3억원 이하 5%, 초과 14% 분리과세	2014년말	혜택종료
	부동산투자회사	개인		한도 없음	3억원 이하 5%, 초과 14% 분리과세	2014년말	혜택종료
	선박투자회사	개인		한도 없음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2억원 14% 분리과세	2015년말	혜택종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개인		연4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개인연금저축	만20세 이상	10년 이상	월 100만원	소득공제 연간 72만원 한도	2000년말	적용기한 종료
	청약저축	근로소득자	5년이상	청약저축 연 12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연500만원 한도, 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 상환액·원세 소득공제 연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인 공제부금	공제 가입자		3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거래 주식 투자	3년이상	적립식저축 연1,200만원	1년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 공제	2009년말	적용기한 종료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40%이상 국내 거래주식 투자	10년이상	연600만원	납입액의 40%공제	2015년말	적용기한 종료

주: 1) 동 기간말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혜택 부여  
 2) 비과세·감면 혜택 자체가 동 기간 말에 종료되는 것을 의미

**<표 II-2> 저축지원 비과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액 규모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일몰 기한	2012 (실적)	2013 (잠정)	2014 (전망)
조세특례법상 조세지출		15,018	15,079	16,057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86의2)	×	286	144	15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	368	535	4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87의2)	2014	120	119	121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5)	2015	16	25	2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6)	2014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88의2)	2014	3,992	4,014	4,18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	408	248	296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5, 조특법§89의3)	2015	7,943	8,110	8,426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9)	2014	1,805	1,866	1,925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91의6)	2014	12	12	13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2014	신설	1	1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4)	2015	-	신설	5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6)	2015	신설	신설	신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

### Ⅲ.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 실태 분석

- 제Ⅲ장에서는 일몰이 도래하고, 조세지출액이 가장 큰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심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함
- 본 분석을 위하여 금융상품별 가입 인원 및 가입규모<sup>1)</sup>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함

####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이용 현황

##### 가. 세금우대종합저축

- 20세 이상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률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가입률은 2007년 37.9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30.57%까지 하락
- 연령별로는 20~50대의 가입률은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의 가입률은 증가
  - 특히 70대 이상의 가입률이 2007년 15.93%에서 2013년 19.23%로 3.40%p 증가
- 1인당 평균가입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1,160만원에서 2013년 923만원으로 감소
  - 이는 2009년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일반인의 경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저축액은 923만원, 1계좌당 평균 금액은 735만원(1인이 복수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 일반인의 경우 1인당 평균 726만원
  - 반면 노인의 경우 1인당 평균 1,879만원으로 저축자 유형별 분류에서 가장 높음

1) 동 자료의 가입 규모는 불입식과 예치식의 합계이며, 불입식의 경우 계좌를 신청할 때 신고한 한도액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동 자료를 이용한 규모의 경우는 최대치(maximum amount)로 해석하면 됨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1인 평균 1,800만원이 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766만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1,609만원, 독립유공자가 1,571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46만원 순임

#### 나. 생계형 저축

- 2013년 기준 생계형 저축의 총규모는 약 95조원, 가입자 약 452만명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2,100만원임
  - 총저축규모별로 보면 노인계층이 약 88조원, 장애인 계층이 약 6조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
  - 인원별로 보아도 노인계층이 418만명, 장애인이 30만명으로 전체의 99%를 차지
- 생계형 저축의 1인당 평균 금액을 계층별로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가 2,449만원, 국가유공상이자가 2,311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2,296만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2,247만원, 장애인이 2,107만원, 노인이 2,102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3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다른 계층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생계형 저축의 경우에도 평균 1,003만원 정도의 저축액을 보유
- 연령대별로 1인당 평균 저축액을 계산하면 59세 이하가 1,923만원, 60대(60세 이상~69세 이하)가 2,158만원, 70대(70세 이상~79세 이하)가 2,111만원, 80대(80세 이상~89세 이하)가 1,915원, 90세 이상이 1,586만원임
  - 가입자 수로 볼 때 60대가 213만명, 70대가 168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다.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

- 출자금을 불입한 20세 이상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협동조합에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줌

-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155조원이며, 가입 인원은 744만명
  - 농(축)협이 72조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가 48조원, 신협이 27조원으로 이들 기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 가입 인원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농(축)협이 372만명, 새마을금고가 256만명, 신협이 142만명의 순서이며, 이들의 합계가 770만명으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입 인원보다 많게 나옴
  - 연령별로는 50대가 39조원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33조원, 30대가 26조원의 순임
  - 연령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50대가 183만명, 40대가 160만명, 30대가 130만명의 순서
- 1인당 평균 예탁금액은 2,086만원 수준이며, 60대가 2,158만원으로 가장 많고, 70세 초과가 2,148만원, 50대가 2,126만원, 40대가 2,037만원, 20대가 2,042만원, 30대가 2,034만원이고, 20세 이하는 827만원 수준임<sup>2)</sup>
- 기관별 1인당 예탁금액은 수협이 1,947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순이나 1,882만원~1947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음
- 출자금은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불입하는 금액으로서 예금과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71조원, 가입자는 1,274만명
  - 총규모로는 신협(약 31조원), 농(축)협(약 20조원), 새마을금고(약 19조원)의 순이며, 가입자 기준으로는 새마을금고(696만명), 신협(440만명), 농(축)협(204만명)의 순임
- 1인당 평균 출자금 규모는 전체 평균이 560만원임<sup>3)</sup>
- 1인당 평균 출자금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세 초과가 711만원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664만원, 50대가 589만원, 20세 이하가 579만원, 40대가 505만원

2) 20세 미만은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아님

3)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하여 비과세

## 2. 설문조사를 통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제도의 평가

### 가. 설문설계 및 표본선정

-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들로부터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현황, 저축효과 및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을 분석
  - 설문지는 <표 III-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조합 등의 출자금(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예탁금,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농어 가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및 소득공제용 개인연금 상품을 설문대상으로 함
  
-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주민등록통계상 전국의 만 20~79세의 일반국민(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으로 정의하고, 세부적인 표본추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추출단위(sampling unit)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이며, 조사단위(survey unit)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설정하고, 추출틀(sampling frame)은 2014년 4월 기준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활용(제주지역 제외)
  - 표본의 크기는 1,000명(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시도, 연령, 성별 비례할당방식을 적용

### <표 III-1> 설문설계(설문지 구성)

-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제도 인식
    - 가입조건, 특정가입대상자 유무, 절세효과, 세금회피,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이용 등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정보원천
    - 홈페이지, 지점방문, 상품리플렛(설명서), 설계사 등 이용현황
  3.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현황
    - 가입상품, 불입방법, 회원자격, 출자목적, 예탁목적, 각 가입상품의 불입금액
  4.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저축효과
    - 가입 당시 재원 현황, 향후 조세혜택 확대 및 축소에 따른 가입의향
  5.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 각 금융상품별 가입대상확대, 한도확대, 세제혜택확대에 대한 가입의 반응
  6. 개인 및 가구경제 상황
    - 개인 및 가구의 월평균소득, 자산, 부채 현황 등
  7. 인구통계학적 문항
- 

#### 나. 표본의 분포

- 최종 표본은 1,124명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 중 남자는 48.5%인 545명, 여자는 51.5%인 579명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6%(232명), 30대 18.6%(209명), 50대 18.5%(208명), 60대 17.9%(201명) 순
  -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562명), 경상권 21%(236명), 전라권 16.8%(189명), 충청권 9.5%(107명) 및 강원권 2.7%(30명) 순
  - 또한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일반회사 회사원이 33%(371명), 자영업자 30.2%(339명), 전업주부 16.4%(184명) 그리고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 6.5%(73명) 순
  
- 또한 응답자의 소득별 및 자산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개인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월 100~200만원 소득자가 27.8%로 313명, 200~300만원은 24.3%인 273명 그리고 300~400만원 소득자는 13.8%인 155명임.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은 월 300~500만원 사이가 44%로 495가구, 100~300만원은 26.8%로 301가구, 500~700만원 소득은 17.9%인 201가구 순

- 또한 개인 총자산의 분포에서는 1,000~2,500만원 구간이 17.6%로 198명, 1억원~2억원 사이가 15.7%인 177명이며, 가구 총자산의 분포에서는 1억원~1억 5천만원 사이가 27.1%인 305가구, 2억 5천만원~3억 5천만원 구간 17.9% 201가구임

## 다. 시사점

###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도

- 조사 결과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에서 일정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
  - 편법으로 현행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식한 가입자가 53.7%이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가 본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가입자가 61.5%에 달함
  - 또한 금융상품 가입에 특정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52.2%가 가입 조건의 충족없이도 가입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
  - 이는 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2013.10)<sup>4)</sup>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 (2) 세금우대종합저축

- 유효응답자 중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는 총 412명으로 총불입액의 평균은 약 509만원, 총불입액의 합계액은 약 19억 7천만원이며, 대체로 예치식이 불입식에 비해 고액의 불입액 수준을 보임

4)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2013.3)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공동우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부정으로 가입시켜 비과세 예탁금을 불입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 가입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아래 자료는 2010. 1. 1.~2013. 3. 31 기간 동안 전국 신협에 무자격 조합원과 가입 예탁금 현황을 나타냄.

(단위 : 개, 명, 백만원)

전체 지역조합 수	무자격 조합원 보유조합 수	무자격 조합원수	무자격 조합원 중 비과세 예탁금 가입현황		
			비과세 예탁금 가입조합원수	비과세 예탁금 총 불입액	부당 면제받은 이자소득세액
684	582	110,923	26,826	661,538	3,084

- 불입식의 경우, 응답자의 73.3%인 302명, 평균 414만원, 중위수가 400만원으로 대체로 한도액 1,000만원 이내에서 정규분포
- 반면, 예치식의 경우 응답자의 25%인 103명, 총불입액의 평균이 708만원, 중위수가 1,000만원으로 대체로 가입자 상당수가 한도액에 근접한 분포

<표 III-2>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현황

(단위: 만원, 유효응답자 412명)

구분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가입현황	가입자 수(비율)	302명(73.3%)	103명(25.0%)	7(1.7%)
	평균 총불입액	414	708	600
	표준편차	241	375	218
	합계	124,919	72,940	4,200
총불입액 분포	최소금액	10	10	300
	백분위수25%	230	300	500
	중위수	400	1,000	580
	백분위수75%	560	1,000	720
	최대금액	1,000	1,000	1,000

주: 1.설문응답자 중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는 총 451명이었으나, 유효응답자는 412명이었음

- 연령별, 개인 월소득 및 가구 금융자산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총불입액이 크며, 고소득자일수록 한도액에 근접한 불입액의 분포를 보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과 중위수가 증가하며, 또한 개인의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평균과 중위수가 증가함
  - 특히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응답자가 불입액의 평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입액 수준 또한 한도액에 근접
- 금융자산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부분 한도액인 1,000만원 수준을 저축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금우대저축이 대체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연령대, 고소득자 그리고 고액자산가의 저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시사

(3) 생계형 저축

- 생계형저축 가입자는 유효응답자 중 106명이며, 총불입액의 평균은 약 884만원, 총불입액의 합계액은 약 9억 3천만원임
- 불입식의 경우 가입자의 57.5%, 총불입액의 평균은 371만원으로 최대불입액은 한도액에 못 미치는 1,500만원 수준
- 반면, 예치식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40.6%, 총불입액의 평균 1,575만원으로 최대 불입액은 한도액인 3,000만원이며, 대체로 불입식에 비해 한도액 쪽으로 치우친 분포

<표 III-3> 생계형저축 가입현황

(단위: 만원, 유효응답자 106명)

구분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가입현황	가입자 수(비율)	61(57.5%)	43(40.6%)	2(1.9%)
	평균 총불입액	371	1,575	1,650
	표준편차	303	1,143	778
	합계	22,652	67,730	3,300
총불입액 분포	최소금액	10	10	1,100
	백분위수25%	150	500	1,100
	중위수	300	1,000	1,650
	백분위수75%	500	3,000	2,200
	최대금액	1,500	3,000	2,200

주: 1.설문응답자 중 생계형저축 가입자는 총 116명이었으나, 유효응답자는 106명이었음

- 연령별, 개인 월소득별 및 가구 금융자산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와 50대 가입자가 대체로 한도액에 가까운 불입액의 분포를 나타내며,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 응답자의 불입액 평균이 높음
- 또한 가구 금융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부터 평균 불입액이 급격히 증가
- 40대와 50대 가입자의 평균 불입액이 각각 1,250만원, 3,000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60대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만 60세 이상 경로자 가입조건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
- 월 300~400만원 소득자의 평균 불입액이 1,292만원, 500~600만원은 3,000만원으로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입액의 수준
- 또한 가구의 금융자산이 3,000~6,000만원인 가구는 평균 불입액이 1,349만원, 6,000~9,000만원은 2,667만원을 나타내며, 중위수는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

으로 불입액 수준이 급격히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생계형저축이 만 60세 이상 경로자,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과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

#### (4) 조합 등 예탁금

- 농협 예탁금에 가입한 유효응답자는 총 195명으로 평균 총불입액은 약 857만원이며, 총불입액의 합계액은 약 16억 7천만원임
- 불입식은 응답가입자의 44.6%로 총불입액 평균은 566만원, 중위수는 360만원으로 대체로 한도액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
- 반면에 예치식은 응답가입자의 50.3%, 총불입액 평균 1,065만원, 중위수는 1,000만원으로 한도액 쪽으로 치우친 분포

<표 III-4> 농협의 예탁금의 가입현황

(단위: 만원, 유효응답자 195명)

구분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가입현황	가입자 수(비율)	87(44.6%)	98(50.3%)	10(5.1%)
	평균 총불입액	566	1,065	1,350
	표준편차	627	938	1,124
	합계	49,256	104,373	13,500
총불입액 분포	최소금액	30	10	300
	백분위수25%	180	300	500
	중위수	360	1,000	1,000
	백분위수75%	600	2,000	2,800
	최대금액	3,000	3,000	3,000

주: 1.설문응답자 중 농협의 예탁금 가입자는 총 223명이었으나, 유효응답자는 195명이었음

- 연령대별 분포에서 40대와 60대의 불입액 평균이 크며,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업주부<sup>5)</sup> 및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개인 월소득별 분포에서는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높은 불입액의 분포를 나타내며, 가구 금융자산은 6,000만원 이상의 가구가 예탁금 불입액이 가장 높은 편
- 농협 예탁금의 가입자 중 준조합원이 21.6%<sup>6)</sup>로 총불입액의 평균 510만원, 합

5) 전업주부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대체로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6) 동 결과는 19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전수조사와 차이가 남

계액은 6,630만원이며,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40대가 평균 1,026만원, 60대가 평균 1,053만원

- 직업별 분포에서는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가 평균 869만원으로 자영업자(평균 960만원), 무직(평균 1,051만원)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농협의 본래 취지인 농업 등의 종사자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지원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

□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유효 응답자가 각각 28명과 56명으로 매우 적으나, 농협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저축 효과

□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협 등의 예탁금은 62.6조원이 증가한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잔고는 60.5조원이 감소

- 같은 기간 비과세감면 저축 잔고는 13.8조원 증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자금이 농협 등의 예탁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런 결과는 2009년 농협 등의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축소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농협 등의 예탁금에 불입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다는 응답이 39.8% 나옴에 따라 어느 정도 저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8)</sup>

- 예탁금 불입을 위하여 다른 금융상품을 해지한 경우는 9.9%로서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 저축보다 높은 결과

7) 2009년부터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함.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는 만20세 이상의 경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생계형 저축 적격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8) 이렇게 소비를 줄여가며 저축액을 늘린 가입자의 경우는 능동적 저축자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음. 즉,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이 아니더라도 저축을 향후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저축을 늘리는 능동적 저축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저축효과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음.

<표 III-5> 조합 등의 예탁금의 저축효과

(유효응답자 281명)

질문내용	응답비율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1) 조합 등의 예탁금을 가입하기 위해 가입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	9.9%	90.1%	-
(2) 조합 등의 예탁금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렸다	39.8%	60.2%	-
(3) 조합 등의 예탁금을 가입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8%	96.3%	-
(4) 조합 등의 예탁금을 가입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1.9%	98.1%	-
(5) 조합 등의 예탁금을 가입할 당시보다 현재의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다.	51.0%	49.0%	-

주: 1.유효응답자는 농협 195명, 신협 28명, 새마을금고 52명, 축협 4명, 수협 및 산림조합 각각 1명임

- 한편, 향후 더 좋은 절세상품이 나올 경우 금융자산의 이전행위, 소비감소를 통한 저축증대행위 간의 선택에 대하여 질문하고, 절세효과가 축소될 경우 현행 금융상품의 해지의향을 물음
  - 대체적으로 더 좋은 절세상품이 나올 경우, 현재의 상품을 해지하고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옴
  - 반면 절세효과가 축소될 경우에는 현행 상품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금융상품별 '향후 절세효과가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출시'에 따른 해지의향

(응답자 1,124명)

구분	응답비율					평균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sup>1)</sup>	4.4%	27.6%	27.1%	38.1%	2.8%	3.07	
세금우대저축	3.3%	19.1%	30.6%	43.7%	3.3%	3.24	
생계형저축	2.8%	28.3%	32.1%	32.1%	4.7%	3.08	
조합 등 예탁금	농협	3.6%	21.9%	30.5%	42.2%	1.8%	3.16
	신협	-	28.6%	28.5%	39.3%	3.6%	3.18
	새마을금고	-	34.6%	26.9%	30.8%	7.7%	3.12

주: 1.전체 평균은 이하 3가지 저축 이외의 저축도 포함한 평균임

<표 Ⅲ-7> 금융상품별 '향후 세금혜택 축소'에 따른 해지의향

(응답자 1,124명)

구분	응답비율					평균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sup>1)</sup>	4.8%	33.4%	37.3%	22.6%	1.9%	2.83	
세금우대저축	2.9%	27.2%	41.3%	26.9%	1.7%	2.97	
생계형저축	0.9%	34.9%	36.8%	24.6%	2.8%	2.93	
조합 등 예탁금	농협	3.6%	28.7%	41.7%	23.8%	2.2%	2.92
	신협	-	39.3%	28.6%	32.1%	-	2.93
	새마을금고	1.9%	36.5%	30.8%	26.9%	3.9%	2.94

주: 1.전체 평균은 이하 3가지 저축 이외의 저축도 포함한 평균임

## IV. 비과세 · 감면제도 개선방안

### 1. 현행 비과세 · 감면제도의 문제점

#### 가.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

-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크며, 실제 지원하려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준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 조합원이 아니라도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011년 말 기준 농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62조원 가운데 농어민 조합원의 예탁금은 19.1%에 불과했고 50조원(80.9%)이 준조합원의 예탁금
    - 농어민 조합원의 저축지원보다는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의 성격
  -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은 비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해
  -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준조합원의 개념이 없는 새마을금고, 지역 신협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표 IV-1>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총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조합원	비율	준조합원	비율	계
2009년	1,780,730	109,222	19.7	445,506	80.3	554,728
2010년	1,956,655	113,968	19.5	472,162	80.5	58,6130
2011년	2,088,243	119,252	19.1	504,913	80.9	624,165

자료: 농협중앙회

## 나. 생계형저축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가입자,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도 발생
    -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1,290만원에 불과하지만 노인가구 중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10,883만원(<표 IV-2>참조)
  - 따라서 비과세는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표 IV-2>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평균	4,475	811	2,173	3,586	5,386	10,417
	중앙값	3,600	-	-	-	-	-
한부모가구	평균	2,774	1,074	2,103	3,424	5,128	11,345
	중앙값	2,113	-	-	-	-	-
조손가구	평균	2,189	926	2,048	3,329	5,152	8,296
	중앙값	1,520	-	-	-	-	-
노인가구	평균	1,290	677	2,072	3,512	5,066	10,883
	중앙값	783	-	-	-	-	-
장애인가구	평균	2,907	813	2,125	3,556	5,310	9,472
	중앙값	1,998	-	-	-	-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 다. 세금우대종합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생계형저축 적격자의 경우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세지출 규모가 2014년 1,925억원으로 전망되며 금융소득 관련 조세지출 중 세번째로 큼

○ 가구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

- <표 IV-3>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소득 상위 20%의 경우 평균 자산이 75,437만원이고 평균 저축액은 16,243만원임에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

<표 IV-3>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명, 세, 만원, %)

구분		평균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 수		2.9	1.7	2.5	3.1	3.5	3.8	
가구주 연령		51.4	64.3	50.6	46.9	47.0	48.4	
전체	자산	32,556.9	10,074.7	17,801.2	24,115.1	35,344.7	75,437.7	
	저축액	6,343.2	1,166.2	2,849.2	4,458.8	6,995.2	16,243.8	
	적립식저축	3,414.9	559.4	1,494.7	2,585.3	3,928.8	8,505.0	
	예치식저축	2,393.9	529.7	1,136.2	1,473.2	2,344.7	6,484.7	
	부채	5,818.4	1,245.8	3,329.6	4,260.6	6,532.5	13,721.5	
보유 가구	자산	평균	32,556.9	10,074.7	17,801.2	24,115.1	35,344.7	75,437.7
		중위값	18,078	4,391	10,061	15,924	26,100	49,26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축액	평균	6,343.2	1,166.2	2,849.2	4,458.8	6,995.2	16,243.8
		중위값	2,684	239	1,278	2,640	4,520	9,604
		비율	99.7	98.7	99.8	99.9	99.9	100.0
	적립식 저축	평균	3,414.9	559.4	1,494.7	2,585.3	3,928.8	8,505.0
		중위값	1,740	154	840	1,840	2,962	5,750
		비율	99.6	98.6	99.8	99.9	99.9	99.9
	예치식 저축	평균	2,393.9	529.7	1,136.2	1,473.2	2,344.7	6,484.7
		중위값	2,800	1,500	2,000	2,000	2,500	4,800
		비율	38.3	19.1	28.6	35.1	47.0	61.8
	부채	평균	5,818.4	1,245.8	3,329.6	4,260.6	6,532.5	13,721.5
		중위값	3,530	1,320	2,000	3,000	4,100	8,600
		비율	66.9	34.9	63.9	74.1	79.8	81.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 2. 제도 개선 방안

### 가. 중장기적 방향

-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
  - 여러 가지 정책목적에 따라 필요시 다양한 비과세·감면 상품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허용 목적, 조기 해약시 제재 등이 서로 다름
  - 현실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특정 기한(예: 2017년)까지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는 것도 방안
    - 이 방안에 따르면 특정 기한(예: 2017년)에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음
  
- 조세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신규저축을 장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산의 이동만을 유도하여 세수손실을 초래
  
-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시행
  - 모든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저축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저축이나 자산축적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필요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거나 한도를 설정할 필요

## 나. 일몰도래상품에 대한 대응방안

### (1) 세금우대종합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세제지원을 통한 세후 수익률의 증가가 저축의 증가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비과세·감면상품의 가입이 다른 상품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결과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제지원을 축소하여도 현재 가입 상품을 해지하지는 않겠다고 답변
  
- 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지출은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만 초래할 뿐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다수
  - Attanasio et al.(2004)은 비과세 저축계좌의 도입이 금융자산을 일반과세 계좌에서 비과세계좌로 이동시키는 자산이동효과(asset shifting)만 크고 실제 총저축의 증가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 제시
  - OECD(2007)에 따르면 영국의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저축계좌인 Individual Saving Account(ISA)의 도입으로 응답자의 15% 정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다고 응답함
    - 영국의 ISA 도입으로 인하여 특히 고액자산가나 노인층의 금융자산 이동이 컸으며 순저축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취약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의 경우에는 한도 이외의 다른 제약이 없으므로 가입 대상이 광범위하여 저축여력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가입요건이나 가입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들은 고소득층의 절세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 가능
  - OECD(2007)는 11개 회원국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의 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과세 저축상품의 가입률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설명

- 또한 소비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전병목·홍범교(2006)는 기대수익률의 변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 소비대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이는 저축이 이자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저축의 동기가 소비평탄화를 통한 효용극대화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요인도 크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용 실태 및 저축에 미치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b>제1안</b>	<b>세금우대종합저축의 폐지</b>
------------	---------------------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저축 한도는 현행 유지
  - 현행 생계형 저축의 경우 평균 예금액이 2,100만원, 생계형 저축 적격자의 세금우대저축 평균 예금액은 1,800만원 수준
  - 1,800만원의 예금에 대하여 현행 9% 저율과세를 비과세로 전환할 경우 640만원 정도에 해당
  - 따라서 비과세 기준으로 평균 예금액이 2,740만원에 해당하므로 현행 한도 3,000만원을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음
  
- **장점:** i) 현재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존재하는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함으로써 비과세·감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
  
- **단점:** i)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음
  - ii) 세금우대종합저축만 폐지될 경우, 금융업권 간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

<b>제2안</b>	<b>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b>
------------	--------------------------

- 현행 제도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자격조건에 추가하여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는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

- **장점:** i)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보다 충실하게 따르게 되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단점:** i)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됨  
ii)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크지 않음

<b>제3안</b>	<b>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b>
------------	-----------------------

- **현행** 1,000만원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 **장점:** i) 모든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축을 유인하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보편적인 기회를 제공함
- **단점:** i) 현재의 1,000만원을 축소하여 수백만원 수준으로 할 경우, 사실상 저축 유인이 크지 않음  
ii) 추가적인 세수효과도 크지 않음

## (2) 생계형저축

- 생계형저축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나 인원 수 기준으로 볼 때 노인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6%와 78%로 압도적임
  - 따라서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대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전체 가입대상 노인계층 중에 실제로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노인의 비중은 약 48% 수준
  - 저축여력이 안 되는 노인계층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가능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가입 대상 그룹의 경우 모두 이보다 가입률이 많이 낮음

<b>제1안</b>	<b>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b>
------------	-------------------------------------

- 생계형저축의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중산층 이상 또는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하여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추가하여 가입대상을 한정할 필요
    - 예를 들어,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 요건의 소득인정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점:** i)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ii) 저축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조세지출 축소
  
- **단점:** i)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 단, 기초연금지급을 위한 소득요건 등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최소한에 그칠 수 있음<sup>9)</sup>

<b>제2안</b>	<b>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1인당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b>
------------	--

-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가입한도를 현재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입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50%의 저축액은 1천만원 이하
  - 60대 이상 가구주의 평균 저축액은 4,760만원, 중앙값은 1,010만원에 불과

9)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이므로,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다면 60세부터 65세까지의 소득환산액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
- 장점: i) 가입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 60세 이상 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ii) 가입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  
iii) 제1안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단점: i)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은퇴 이후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음<sup>10)</sup>

<b>제3안</b>	<b>연령 기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b>
------------	------------------------------------

-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연계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를 반영
- 장점: i) 대상 인원 감소를 통하여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ii)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지출 제도상의 노인기준 연령과의 정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단점: i) 실질적으로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계층의 경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3) 조합 등의 예탁금

- 현재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6년에 5%의 세율로 저율과세하고, 2017년부터 9%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sup>10)</sup> 그러나 제1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현재 일몰이 2015년이므로 2015년 세법개정 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b>제1안</b>	<b>현행 제도 유지(2017년 이후 점진적 일반과세화)</b>
------------	-------------------------------------

-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점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이도록 되어 있음
  - 다만 2017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일반과세하여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
- **장점:** i) 장기적으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에 기여
  - ii)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자율 탄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후 이자율이 감소하더라도 저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단점:** i)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저율과세로 전환되면 일부 자금은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저율과세로 유지된다면 예금 자산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장기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면 상당한 예탁금 자산이 경쟁우위에 있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b>제2안</b>	<b>가입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b>
------------	------------------------

- 실제 지원하려는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고 준조합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배제
  - 신협, 새마을금고는 준조합원제도가 없음
- **장점:** i)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부합
- **단점:** i) 농협, 수협 등은 준조합원의 개념이 있지만 준조합원의 개념이 없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b>제3안</b>	<b>가입한도의 단계적 축소</b>
------------	---------------------

-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1차 단계에서 가입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2차 단계에서 다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도를 폐지함
- 201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어가의 연평균 저축액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볼 때 연평균 저축액은 1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 가능
  -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원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91만원으로 연평균 저축액은 약 1천만원 수준
  - 농어가의 부채까지 고려해 볼 경우, 농어가의 실제 저축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 3천만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표 IV-4> 농어가 소득과 가계지출(2013년)

(단위: 천원)

구분	소득	지출	부채
농가	34,525	30,264	27,363
어가	38,585	28,083	40,422
평균	36,555	29,174	33,893

자료 : 통계청, 「201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표 IV-5>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2014년 1/4분기)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1,349.6	2,824.7	3,912.8	5,226.7	8,700.0
지출	1,547.6	2,550.0	3,356.6	4,126.6	5,886.7
저축	-198.0	274.7	556.2	1,100.1	2,813.3

자료 : 통계청,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의 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계좌의 약 63%가 1천만원 이하의 계좌이고, 2천만원 이하의 계좌가 약 84%임(<표 IV-6> 참조)
- 인원 수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80%가 1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음(<표 IV-7> 참조)

<표 IV-6>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분포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합계
계좌수	2,498,948	824,552	640,468	3,963,968
비율	63.04	20.80	16.16	100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표 IV-7> 새마을금고 예탁금 금액별 회원수 분포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회원수	9,246,564	544,960	1,316,822	757,486	311,401	78,319	12,255,552
비율	75.5	4.5	10.7	6.2	2.5	0.6	100.0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 장점: i)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본래 지원 대상인 조합원이나 서민에 대한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단점: i)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
- ii)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조합 등의 예탁금이 경쟁우위에 있는 시중 은행 등으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

## **제2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

## I. 서론

- 1996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생금융시장이 개설된 이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당시로서는 선물이라는 신금융상품이 상장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비과세 정책 시행
  - 1997년에는 옵션도 상장한 이후,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룸
  -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KOSPI 200 옵션의 경우에는 최근년까지 거래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였음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개설 당시의 유치산업 보호론은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론은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다만 최근의 논의는 과세를 하되, 거래세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의 경우에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으나, 대주주들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보유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나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시장과 대비됨
  
- 본고에서는 최근의 논의를 감안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으로서 거래세 형식을 취할 것인지, 소득세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 과세방식의 장단점과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Ⅱ. 파생금융상품 소득세 과세

### 1. 소득세 과세 방안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입장
  -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안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안<sup>11)</sup>이 계류되어 있음
  
- 중장기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통합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을 본다면 전자의 안(나성린 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성린 안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타 금융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 공제는 허용하지 않되, 250만원의 기본공제 허용

### 2. 소득세 부과 시 경제적 효과

#### 가. 세수 효과

- 파생상품 잔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산함

---

11) 각각 나성린 의원안과 홍종학 의원안을 지칭

- 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탄력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의 형태 변화는 없다고 가정
  - 나성린 의원안에 따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손실공제는 없다고 가정
- 양도소득세율을 10%로 가정하고 세수를 계산하면 약 368~480억원<sup>12)</sup> 규모 (<표 II-1> 참조)
-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정하면 세수 규모는 약 735~960억원 규모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0%일 경우보다 거래량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짐

<표 II-1>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시 세수 효과

(단위: 억원)

세율	2011년	2012년	2013년
10%	475.9	479.8	367.7
20%	951.8	959.6	735.4

- 양도소득세 도입 시 투자자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세수를 추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도입 후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개인의 경우 이익보다는 손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실공제를 허용할 경우, 위에서 시산한 세수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임
  - 또한 파생상품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허용한다면 세수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손실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손실 공제의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고,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월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

12) 다시 강조하면 동 수치는 투자자들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임

## 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래탄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거래량을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 등에 의하여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투기거래의 경우 1회전당 목표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주가 상승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기 위하여 매도를 억제하는 고정효과가 있으나 파생상품의 경우 일일정산에 따라 매일 손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고정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유동성이 축소되어 거래비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량도 감소할 수 있음

## 다. 양도소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주식 현물과 과세 형평성 문제
  - 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는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
  -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음
  - 손실공제를 허용한다면 세수 규모도 크지 않을 수 있음
  
-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의 효율성이 감소될 가능성
  - 주식 보유자가 주가 하락을 대비하여 선물을 매도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헤지효과가 감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보다는 주식을 매도하려는 인센티브

가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동시에 실시하여 주식 현물과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
  
- 차익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
  -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거래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경우 현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선물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현물 매도 시 거래세만 부과됨
  - 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현물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선물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현물 매도 시 거래세, 선물거래에서는 소득세가 부과
  - 따라서, 투자자는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통한 차익거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의 목적과 달리 주가의 변동방향을 적극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결과적으로 차익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물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 2004년에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을 때도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때문에 통과되지 못함
  - 단,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투자자가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와 같은 현-선 연계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도세 부과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함께 정비하여야 함
  - 현재 간접투자상품은 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채권 양도차익과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과세 대상임
  -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분리과세된다면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Ⅲ.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과세

#### 1. 거래세 과세 방안

- 2004년에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이유로 법안이 폐기됨
  - 2012년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세율은 탄력세율을 기본으로 하나, 2016년부터 선물은 명목금액의 0.001%, 옵션은 프리미엄의 0.01%를 부과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이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준비중
  - 동 과세안은 파생상품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 거래세 부과 시 경제적 효과

##### 가. 세수 효과

- <표 II-2>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에 따라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세수추계를 보여줌
-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래세 부과 시 거래감소를 나타내는 탄력성이 매우 큰 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순 추계한 수치임
- 선물에 대하여 0.001%, 옵션에 대하여 0.01%를 부과할 경우 예상 세수는 2011~2013년까지 각각 1,562억원, 1,099억원, 905억원임
- 최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이후 거래량 감소에 따른 연차별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I-1>과 비교하면 조세행정비용과 세수를 고려할 때 거래세 부과가 양도소득세 부과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 시장거래가 증가하면 거래세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움

<표 II-2>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세수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거래대금	세수(0.001% 세율)
코스피200선물	2011	112,599,330	1126.0
	2012	79,437,345	794.4
	2013	64,214,227	642.1

구분	연도	거래대금	세수(0.01% 세율)
코스피200옵션	2011	4,363,264	436.3
	2012	3,046,847	304.7
	2013	2,628,734	262.9

#### 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거래세 부과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가격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를 크게 감소시키고 유동성도 감소하여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연구도 있음
- 특히 업계에서는 거래세 부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고빈도거래자의 거

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들의 거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이론적으로 찬반 양론이 있고, 업계의 수요 급감 주장이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험적인 논거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세와 동일한 성격의 수수료를 인상한 후에도 주식 거래량과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경험에서, 거래세와 성격이 동일한 수수료의 부과가 선물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적<sup>13)</sup>
  -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코스피200지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은 무단으로 해외시장에 상장할 수 없음
  - 해외의 예를 보면 대만주가지수선물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서 먼저 상장되었기 때문에 대만주가지수가 기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초기에 SGX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대만선물거래소(TAIFEX)에서의 일평균 거래량보다 많았음
    - 그러나 대만은 선물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 비율이 역전되었는데, 이것은 국내투자 편향성의 예가 될 수 있으며, 거래세 자체가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반증임
  - 시장에 주는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1993년도 금융실명제 도입을 되새겨보면, 당시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단기적인 다소의 충격이 있던 이후 시장은 안정되고 오히려 시장 투명성은 제고되었음
  - 대만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성공적인 파생금융상품을 새롭게 많이 상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수요가 중요한 것이지 거래세 부과는 부차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임<sup>14)</sup>

13) Jickling(2006) 참조

14) 김희성(2010), pp.61~114 참조

- 거래세의 부과는 세수확보와 투기거래의 억제라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s)효과가 있음
  - 만일 거래세 부과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없다면, 세금부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렇다면 이는 세수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효과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음

## IV. 정책 시사점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충실한 장점이 있음
  -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수효과도 소득세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소득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손실공제를 허용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더 차이가 날 수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게 되고, 차익거래의 감소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세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의 과세가 타당한 면이 있으나, 조세행정비용과 세수 등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어도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거래세 과세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 지금까지 수년간 거래세의 부과 논의가 지속되면서 거래세의 투기억제 효과가 강조된 결과, 금융당국에서 세금이 아닌 규제로 투기를 억제하고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규제를 강화함
  - 2012년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조치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
  - 오히려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 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국회에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

-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함
- 그러나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되어야 하며, 간접투자시장에서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결국 현재의 비과세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따라서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 기간을 거쳐 현·선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감사원, 2013.3.
- 김희성, 「세계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방향과 전략」, 『KRX Market』, 2010.1, pp. 61~114.
- 대한민국 정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 2014
- 전병목·홍범교, 『현행 비과세 감면 저축의 실효성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재정경제부·한국조세연구원, 2006.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 \_\_\_\_\_, 『201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2013
- \_\_\_\_\_,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2014
- 한국거래소, KRX자본시장통계포털(<http://stats.krx.c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Attanasio, O., J. Banks and M. Wakefiel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 (Retirement) Saving: 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4.
- Jickling, Mark, "Proposed Transaction Fee on Futures Contract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3, 2006.
- OECD, "Encouraging Saving Through Tax-Preferred Accounts". Paris. OECD, 2007.